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합병에 따른 변경승인 심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 접수 대상

- 방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법인(1개)

신청법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신청일
(주)지에스홈쇼핑	법인합병	(주)지에스홈쇼핑	(주)지에스홈쇼핑	'11.10.5
		(주)디앤샵		

2. 의견제출 기간

- 2011. 11. 11.(금) ~ 11. 24.(목)

3. 의견제출 내용

- 합병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법인의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의견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2011.11.25.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750-2469
- 전자우편 : dslee@kcc.go.kr

5. 유의사항

- 성명·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